

장애인 보조견 출입 환영 협조 안내

◇ 장애인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안내견, 청각장애인도우미견, 지체장애인도우미견, 치료도우미견 등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견입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및 제90조(과태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장애인보조견 표지



장 애 인 보 조 견	
발 급 번 호	-
훈 련 기 관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보조견 표지



장애인보조견 사진